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직인상

전화 053-570-4420 / 팩스 053-570-4242

보도자료

2021. 9. 23.(목)

제 목

키워 준 친할머니 살해 사건 수사 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**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**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오늘(9. 23.)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(여성·강력범죄전담부)는 평소 ‘휴대폰 게임을 많이 한다’고 꾸중하는 친할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’21. 8. 30. 새벽 식칼로 친할머니를 살해하고, 친할아버지 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○○(18세)를 존속살해죄 및 존속살해미수죄로, 그 옆에서 존속살해 범행을 도와준 A○○의 동생인 B○○(16세)를 존속살해방조죄로 각각 구속 기소하였음
- 한편, 초동 수사 단계부터 대구서부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감정의뢰 등 신속하게 증거물을 수집하였고, 검찰은 피고인 등에 대한 보완조사, 대검 통합심리분석, 전문수사자문위원 자문,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규명하였으며, 범행 동기, 공범관계,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철저히 확인하였음
-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지원 절차를 개시하여 유족에게 장례비를 신속히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음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① 피고인

- A○○(18세), B○○(16세)

② 주요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 A○○

- '21. 8. 30. 00:10경 대구 서부 소재 주거지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, 식칼로 친할머니를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,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**【존속살해, 존속살해미수】**

○ 피고인 B○○

- 친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A○○의 존속살해 범행을 도와 **【존속살해방조】**

2

수사 경과

- 8. 30. 119신고 접수, 피해자 조모 사망
- 8. 31. 피고인 A○○, B○○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
- 9. 6. 검찰 송치
- 9. 6. ~ 9. 22. 송치 후 보완수사
- 9. 14. 구속기간 연장(9. 25.까지)
- 9. 23. 피고인 A○○, B○○ 각 구속 기소

3

수사 결과

① 범행 동기 및 경위

- 피고인들 보완조사, 휴대전화 등 추가 디지털포렌식, 정신과 진료 내역 및 심리상담센터 상담내역 분석 등을 통하여, 피고인들이 2012년경부터 친할아버지, 친할머니에 의해 양육되던 중 친할머니로부터 휴대폰 게임에 몰입한다는 이유로 자주 꾸중을 들어온 것이 범행 동기로 확인됨

※ 한편, 피고인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범행 수법에 대하여 검색한 사실을 확인함

②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여부

- 피고인들은 모두 주의력 결핍, 과잉행동 등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 내역이 있으나, 이는 폭력사범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, 특히 피고인 A○○는 비정기적 진료 및 상담을 받은 것에 불과하였음
- 다만,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자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현실 판단력에 영향을 끼치는 심신상태는 아니었으며, 결국 본건 범행 당시 형을 감경하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

4

향후 계획

-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
- 사건 발생 직후 유족인 조부에게 장례비를 신속하게 지급하였고 심리상담 및 유족구조금 안내를 하는 등 추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임☞